

“숙박업 예약서비스” 소비자분쟁해결기준

(한국소비자보호원)

담양 가볼만한곳 : 2016. 06. 01현재

숙박업 (1 - 3)		
분	쟁	유
형	해	결
기	준	비
고		
1) 주중		
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		
-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	○ 계약금 환급	* 사업자가 약
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	○ 총요금의 10% 공제후 환급	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
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	○ 총요금의 30% 공제후 환급	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
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	○ 총요금의 50% 공제후 환급	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
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○ 총요금의 80% 공제후 환급	음의 기간을 적용함.
		.여름시즌: 7.15~8.24
		.겨울시즌: 12.20~2.20
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		* 주말 : 금요일· 토요일
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	○ 계약금 환급	숙박, 공휴일 전일 숙박
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	○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% 배상	*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
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	○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% 배상	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
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	○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% 배상	없는 경우에는 사용당
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○ 손해배상	일 취소로 봄.

숙박업 (2 - 3)									
분	쟁	유	형	해	결	기	준	비	고
2)	주말								
-	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								
.사용예정일	10일	전까지	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	○	계약금	환급			
.사용예정일	7일	전까지	취소	○	총요금의 20%	공제후 환급			
.사용예정일	5일	전까지	취소	○	총요금의 40%	공제후 환급			
.사용예정일	3일	전까지	취소	○	총요금의 60%	공제후 환급			
.사용예정일	1일	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	취소	○	총요금의 90%	공제후 환급			
-	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								
.사용예정일	10일	전까지	취소	○	계약금	환급			
.사용예정일	7일	전까지	취소	○	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	배상			
.사용예정일	5일	전까지	취소	○	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%	배상			
.사용예정일	3일	전까지	취소	○	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%	배상			
.사용예정일	1일	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	취소	○	손해배상				
3)	비수기 주중								
-	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								
.사용예정일	2일	전까지	취소	○	계약금	환급			
.사용예정일	1일	전까지	취소	○	총요금의 10%	공제 후 환급			
.사용예정일	당일	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		○	총요금의 20%	공제 후 환급			
-	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								
.사용예정일	2일	전까지	취소	○	계약금	환급			
.사용예정일	1일	전까지	취소	○	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%	배상			
.사용예정일	당일	취소		○	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	배상			

숙박업 (3 - 3)		
분쟁 유형	해결 기준	비고
4) 주말 -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.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.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.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-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.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.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.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○ 계약금 환급 ○ 총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○ 총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 ○ 계약금 환급 ○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 ○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% 배상	
5)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- 이동수단(항공기 등)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- 이용이 불가한 경우	○ 계약금 환급 ○ 계약금 환급	*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.

담양 가볼만한 곳 (www.dtravel.kr)

- 담양 가볼만한 곳은 소비자와의 환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적용해 운영합니다.